



제2894호 2023. 4. 28.(금)

www.jeonbuk.go.kr

조 례

- 전라북도 조례 제5255호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전라북도 조례 제5256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3
- 전라북도 조례 제5257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전라북도 조례 제5258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전라북도 조례 제5259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지원 조례 14
- 전라북도 조례 제5260호 전라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16
- 전라북도 조례 제5261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18
- 전라북도 조례 제5262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20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03호 대강 신입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환지계획 인가 고시 22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04호 도통 고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환지계획 인가 고시 23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06호 옥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24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07호 상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26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13호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고시 27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14호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고시(익산시) 30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15호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고시(남원시) 31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3-874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32
- 전라북도 공고 제2023-884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33
- 전라북도 공고 제2023-887호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34
- 전라북도 공고 제2023-889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36
- 전라북도 공고 제2023-902호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공고 37
- 전라북도 공고 제2023-904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 41
- 전라북도 공고 제2023-907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42
-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3-3호 재산등록사항 공고 43

도지사 지시사항

○ 2023. 4. 21.(금) 도지사 지시사항	46
----------------------------------	----

시 군

○ 군산시 고시 제2023-62호 도시계획시설(유원지,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47
○ 군산시 공고 제2023-927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변전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49
○ 익산시 고시 제2023-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31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50
○ 익산시 고시 제2023-9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52
○ 익산시 공고 제2023-132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2호)사업 공사완료 공고	53
○ 정읍시 고시 제2023-6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54
○ 정읍시 고시 제2023-67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57
○ 남원시 공고 제2023-922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	60
○ 완주군 고시 제2023-45호 군계획시설(연구시설:국립축산과학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61
○ 완주군 공고 제2023-822호 군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사회복지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	63
○ 임실군 공고 제2023-542호 군계획시설사업(도로:중로3-12호선)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 공고	65

발행 전 라 북 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제3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4. 14.)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4월 28일

전라북도 조례 제5255호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할 수 있다. 다만”을 “사용할 수 있으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를 “직전년도 보다 감소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교육감이 재정여건 상 교육정책사업, 학생복지 또는 그 밖의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생 략)</p> <p>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p> <p>2.·3. (생 략)</p> <p>③ (생 략)</p> <p>④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p> <p>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이 <u>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u>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p> <p>2.·3. (생 략)</p> <p>4. <u>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u></p> <p>5. <u>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경우</u></p> <p>6. (생 략)</p>	<p>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u>전입금</u></p> <p>2.·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사용할 수 있으나,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1. -----<u>직전년도 보다 감소하여</u> -----</p> <p>2.·3. (현행과 같음)</p> <p>4. <u>교육감이 재정여건 상 교육정책사업, 학생복지 또는 그 밖의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u></p> <p><삭 제></p> <p>5. (현행 제6호와 같음)</p>

제3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4. 14.)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4월 28일

전라북도 조례 제5256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의 조성을 위해 전라북도 내 학생, 교직원 및 보호자의 교육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책무)

-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 교직원 및 보호자(이하 “학교구성원”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내용을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반영해야 한다.
- ④ 학교구성원은 자신과 다른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 보호·증진 사업

제5조(인권 보호·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증진과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전라북도 학교구성원 인권 보호·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증진 및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학생·교직원의 인권 상담 및 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
4. 학교구성원의 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학교구성원의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부 및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기본계획의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증진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 전문가 및 전라북도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학교구성원 인권 보호·증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인권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전라북도 내 학교구성원의 인권 관련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인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인권 모니터링) ① 교육감은 매년 전라북도 내 학교 구성원의 인권 관련 모니터링을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인권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강사양성, 연구, 교재개발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학생구성원 인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해당 업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이하 “교육인권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 교육감은 교육인권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인권담당관 1명을 둔다.
 ③ 교육감은 교육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 배치 및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인권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지원청 인권상담실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관련 상담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에 인권상담실을 둔다.

- ②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상담 결과를 정기적으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인권주간의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권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인권주간의 취지에 맞는 공모전, 토론회 등의 사업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표창) 교육감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권활동가, 인권 관련 기관·단체,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장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제13조(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의 설치)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구성원의 인권 관련 제도·정책에 관한 사항
3. 학생·교직원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제1항제3호의 심의 결과에 따라 권리구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시정 권고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국장

나.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인권센터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라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나.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학생의회에서 추천하는 학생의원 3명

다. 인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

라. 교육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대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의·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인권센터의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
다.

제23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
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인권보호와 권리구제

제24조(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 내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누구나 인권담당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인권담당관에게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구제신청과 제2항의 조사 신청을 받은 인권담당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인권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구제신청을 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1. 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 당시 신청의 원인이 된 인권침해 사실에 관해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
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청한 경우
4. 구제신청의 내용이 인권침해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위원회의 의결로 기각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특별한 이유가 없
음에도 다시 신청한 경우
6.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
7.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인권을 침해
당한 학생의 졸업 후 180일이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한 경우

⑤ 제14조제2항 후단의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조
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조치 이행에 의하여 권고 등을 받은 자는 권
고 등을 이행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전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 ① 인권담당관은 제2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기관, 학교 및 교직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 구성원·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학생·교직원·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42조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이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교육인권센터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3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4. 14.)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4월 28일

전라북도 조례 제5257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습지원비”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학습지원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비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방법과 절차, 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p> <p>2. “대안교육기관”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초·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p> <p>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3. “학습지원비”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p> <p>제14조(학습지원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비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방법과 절차, 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제3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4. 14.)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4월 28일

전라북도 조례 제5258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8급 상당
비율	25% 이내	50% 이내	25% 이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3. 별정직 공무원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8급 상당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8급 상당
비율	25% 이내	25% 이내	50% 이상	비율	25% 이내	50% 이내	25% 이상

제3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4. 14.)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4월 28일

전라북도 조례 제5259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학습 및 진로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전라북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습지원비”란 학생이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진로지원비”란 학생이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 교육 활동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에게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지원비 : 초등학교 2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2. 진로지원비 :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② 특수학교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과정을 학습 중인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방법 등)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금액 등) ①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의 지원 금액은 소요 경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4. 14.)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4월 28일

전라북도 조례 제5260호

전라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방향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동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여부, 운영 형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4. 14.)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4월 28일

전라북도 조례 제5261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학교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응급상황 대처 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응급처치교육”이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심장박동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전기충격을 가하는 데 쓰는 의료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3. 응급처치교육 추진 예산 확보 방안
4.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유지·관리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응급처치교육) 교육감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응급상황 시 신고 요령

5.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응급장비의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시행을 위한 필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학교의 장은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응급장비를 설치한 학교의 장은 공공복리를 위한 사용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당 시장·군수에게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응급장비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 응급장비 사용교육

3.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자체 보관하고, 교육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응급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과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4. 14.)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4월 28일

전라북도 조례 제5262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을 말한다.
3.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을 말한다.
4. “수돗물 정수장치”란 「수도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의 장치를 말한다.
5. “학교시설”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목표 및 방향
2. 학교 노후 수도 시설 개선
3. 학교 먹는물 수질 검사
4. 그 밖에 먹는물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지원)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내 노후 수도관, 정수장치 등 수돗물 시설 개선

- 2. 급수탱크나 급수펌프의 배관 등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및 배관성능향상장치 설치
- 3.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수질검사
- 4.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 5.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 6. 그 밖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6조(학교의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 먹는물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 관리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해당 먹는물 관련 시설·기기 폐쇄 및 사용중지
- 2. 음용 금지를 안내하는 표시판 부착
- 3. 부적합 먹는물의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7조(수돗물 정수장치) ① 학교의 장은 안전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해 학교시설에 수돗물 정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돗물 정수장치는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03호

대강 신입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환지계획 인가 고시

남원시(농정과)에서 남원시 대강면 입암리 일원에서 시행한 대강 신입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하고 「농어촌정비법」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수립한 환지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4월 28일

1. 사업명 : 대강 신입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 위치 : 남원시 대강면 입암리 일원
3. 사업목적 : 농지의 규모화, 농로 정비, 효율적인 용배수로 관리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 제공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4. 수혜면적 : 11ha
5. 사업량 : 농지 구획정리, 용수로 961m, 배수로 1,563m 등 수리시설물 보수·보강
6. 사업기간 : 2020년 12월 ~ 2022년 7월
7. 총사업비 : 1,366백만원
8. 종전토지 : 토지소유자 64명, 면적 109,464㎡
9. 환지계획 : 토지소유자 31명, 면적 108,906.8㎡
10. 환지청산금 : 308,257,150원
11. 환지내용 : 남원시 농정과에서 수립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2. 환지내용 열람 장소 : 남원시 농정과(전화 063-620-6389)

전라북도 고시 제2023-104호

도통 고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환지계획 인가 고시

남원시(농정과)에서 남원시 고죽동 일원에서 시행한 도통 고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하고 「농어촌정비법」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수립한 환지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4월 28일

1. 사업명 : 도통 고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 위치 : 남원시 고죽동 일원
3. 사업목적 : 농지의 규모화, 농로 정비, 효율적인 용배수로 관리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 제공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4. 수혜면적 : 17ha
5. 사업량 : 농지 구획정리, 용수로 2,331m, 배수로 1,960m 등 수리시설물 보수·보강
6. 사업기간 : 2020년 12월 ~ 2021년 12월
7. 총사업비 : 2,170백만원
8. 종전토지 : 토지소유자 88명, 면적 196,550㎡
9. 환지계획 : 토지소유자 55명, 면적 197,123.8㎡
10. 환지청산금 : 403,422,710원
11. 환지내용: 남원시 농정과에서 수립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2. 환지내용 열람 장소 : 남원시 농정과(전화 063-620-6389)

전라북도 고시 제2023-106호

옥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서 추진 중인 옥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4월 28일

1. 사업명 : 옥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군산시 신관동, 옥서면 일원
3. 사업목적 :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재해 사전예방, 수리시설물 현대화를 통한 시설물의 효율성 증진 및 영농기반 구축
4. 수혜면적 : 216ha
5. 사업개요 : 양수장 1개소, 제수문 2개소
6.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7. 총사업비 : 2,209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전화 063-440-5816)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조서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옥봉양수장)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789	잡	138	138	한국농어촌 공사					
2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788	구	2,696	44	국 (농림수산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신관제수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군산시 신관동	943-20	구	4,743	320	한국농어촌 공사					
2	군산시 신관동	670-2	구	4,701	20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북도 고시 제2023-107호

상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서 추진 중인 상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4월 28일

1. 사업명 : 상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군산시 옥구읍 일원
3. 사업목적 :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재해 사전예방, 수리시설물 현대화를 통한 시설물의 효율성 증진 및 영농기반 구축
4. 수혜면적 : 53ha
5. 사업개요 : 양수장 1개소
6.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7. 총사업비 : 695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전화 063-440-5816)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조서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상평양수장)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권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812	구	4,528	138	국(농림수산 부)					

전라북도 고시 제2023-113호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4월 28일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 가. 명 칭 : 용월산 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전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산101-1번지의 1필
 다. 지정면적 : 1,634,872㎡
 라. 조성면적 : 10,419.5㎡(중 752.5㎡)

2. 2023년 자연휴양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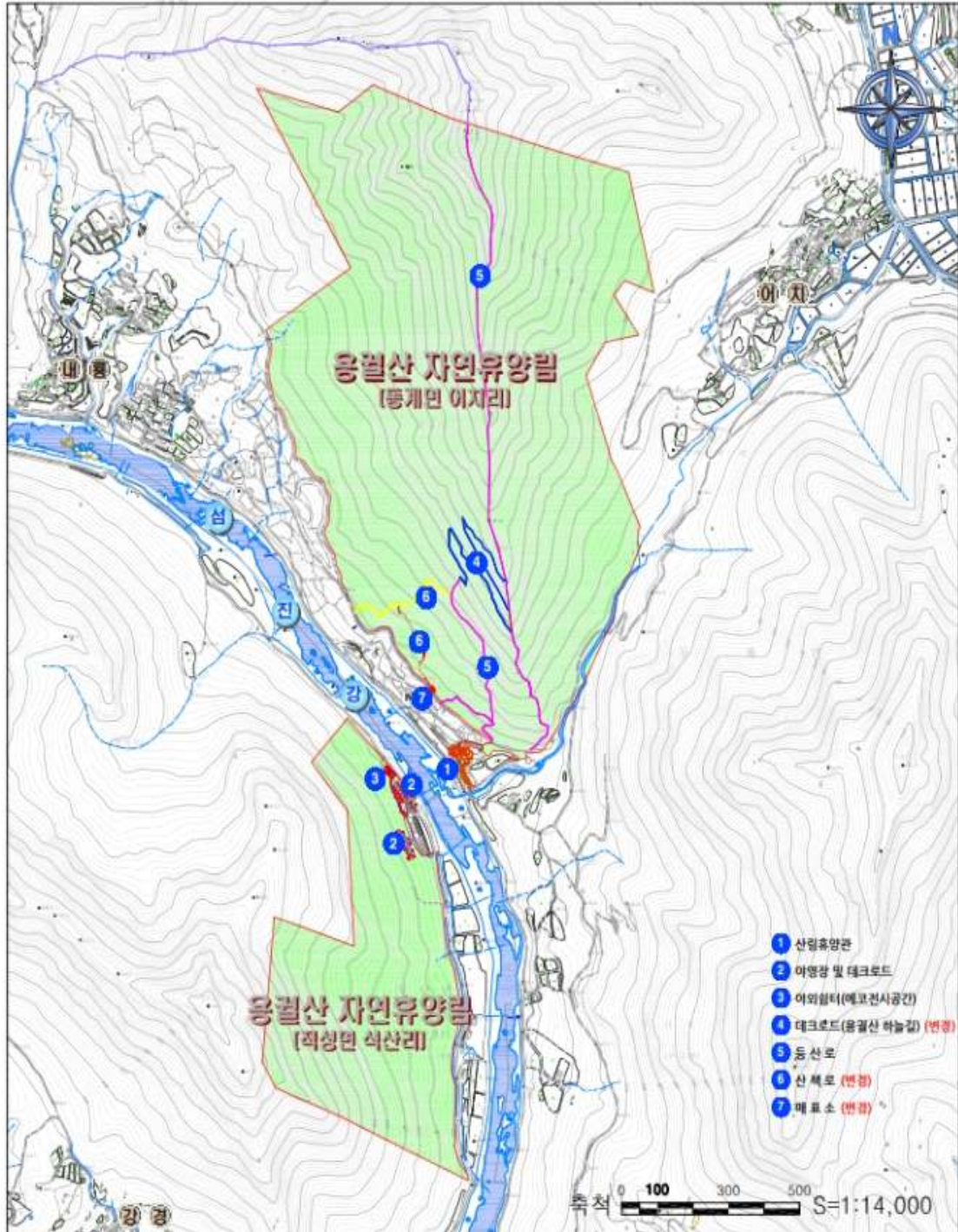
구 분		계	2023년 (1차)	2023년 (2차)	비고
계		447	300	147	
공정별	설계비	37	17	20	
	공사 및 자재비	410	283	127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구분	위 치	시설 종류	단위	규모	수량	형질변경면 적(㎡)	건축		비고	
							면적(㎡)	연면적(㎡)		
합 계							10,419.5	756.4	1,056.67	
숙박 시설	소 계			718.15	2	3,931	718.15	1,018.42		
	동계면 어치리 525-1	산림 휴양관	㎡	718.15	2	3,931	718.15	1,018.42		

편익 시설	소 계					3,613	38.25	38.25	
	적성면 석산리 산96	야영장	개	19	1	570	-	-	
		테크 로드	m	231	1	486	-	-	
		야외 쉼터	m ²	904	1	904	-	-	
	동계면 어치리 산101-1	매표소	개	160	1	160	38.25	38.25	입장료 징수시 설 조성
	동계면 어치리 산101-1	테크 로드	m	1,069	1	1,493	-	-	하늘길 조성
체험 교육 시설	소 계					2,875.5			
	동계면 어치리 산101-1	등산로	m	740	-	1,110	-	-	
		산책로	m	733	-	1,765.5	-	-	산책로 조성

4. 자연휴양림 시설물 배치도



전라북도 고시 제2023-114호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고시(익산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사항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4월 28일

■ 고 시 사 항

- ① 사 업 명 :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 ② 사업시행자 : 지적소관청(익산시청)
- ③ 사 업 위 치

연도	시군	지구명	위치	비고
2023	익산시	와리1지구	익산시 함열읍 와리 198-1번지 일원	

④ 필지 및 면적

시군	지구명	당초		변경		증감내역		비고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익산시	계	668	241,617	640	227,604	△28 (-4.2%)	△14,013 (-5.8%)	
	와리1지구	668	241,617	640	227,604	△28 (-4.2%)	△14,013 (-5.8%)	

- ⑤ 변경사유 : 사업지구 일부(아파트 신축공사 부지) 제외에 따른 필지수 및 면적변경
- ⑥ 지번별조서 : 도보게재 생략
 - 기타 관계서류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비치
 - 연 락 처 : 익산시청 박기원(063-859-5204)
- ⑦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15호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고시(남원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사항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4월 28일

■ 고 시 사 항

- ① 사 업 명 :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 ② 사업시행자 : 지적소관청(남원시청)
- ③ 사 업 위 치

연도	시군	지구명	위치	비고
2022	남원시	이백1지구	남원시 이백면 척문리 63-1번지 일원	
		산동1지구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23번지 일원	
		입암지구	남원시 대강면 입암리 468번지 일원	
		금지1지구	남원시 금지면 택내리 18-15번지 일원	

④ 필지 및 면적

시군	지구명	당초		변경		증감내역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남원시	계	5,830	3,179,486	5,940	2,852,694	126 (1.9%)	△326,792 (-10.3%)	
	이백1지구	2,293	1,356,750.6	2,345	1,307,605	52 (2.3%)	△49,145.6 (-3.6%)	
	산동1지구	1,949	1,130,790	2,014	935,954	65 (3.3%)	△194,836 (-17.2%)	
	입암지구	429	158,849	430	155,189	1 (0.2%)	△3,660 (-2.3%)	
	금지1지구	1,159	533,096.4	1,151	453,946	△8 (-0.6%)	△79,150.4 (-14.9%)	

- ⑤ 변경사유 : 필지 분할(지구계측량)에 따른 사업대상 필지수 및 면적변경
- ⑥ 지번별조서 : 도보게재 생략
 - 기타 관계서류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비치
 - 연 락 처 : 남원시청 김국환(063-620-6131)
- ⑦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3-874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4월 28일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정보통신공사업 제630372호	주식회사 위에너지 (WE Energy Co.,Ltd) 대표자 한운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 51-25, 스페이스온지식산업센터 4115~4118호 (만성동)	2023. 4. 21.

끝.

전라북도 공고 제2023-884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전라북도지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명	지방도 721호선
도로공사의 종류	교량 재가설 1개소(오산교, L=13.0m, B=14.0m) 도로포장 L=113m, B=8.0m		
도로공사 구간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925-31번지 일원		
도로공사 시행장소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925-31번지 일원		
도로공사 착공 예정일	2023. 5.	도로공사 준공 예정일	2025. 12. 31.
도로공사 목적 및 사유	지방하천 초장천을 횡단하는 오산교(지방도 721호선)의 여유고 확보 등 교량 재설치를 통한 하천재해 예방		

전라북도 공고 제2023-887호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실태 조사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4. 28.

전라북도지사

1. 공고내용 :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4. 28. ~ 5. 11.(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가. 법인명 : 합자회사 성마개발
 - 나. 대표자 : 김*신
 - 다. 소재지 : 전북 정읍시 연지7길 26, 101호
4. 공시송달 내용
 - 가. 상기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의거 본 공고내용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따라서, **정해진 기한('23.5.19.)** 내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며, 시정명령 기한 내 별도의 조치가 없을 시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산림녹지과(☎063-280-2681)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상반기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실태 조사자료 제출 요청 공문 1부. 끝.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새로운 변화의 시작!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수신 전라북도내 산림사업법인 귀하
(경유)

제목 2023년 상반기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실태 조사 자료요청

1.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1429(2023.3.22.)호 및 「산림자원법」 제67조(보고·검사 등) 관련입니다.
2. 「2023년 하반기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실태」를 붙임과 같이 조사하고자 하오니, 서식을 작성하여 '23. 5. 19.(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산림자원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주시고, 서류가 미흡하거나 현장 조사가 필요한 법인에 대하여는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점검기간 : 2023. 4. 1. ~ 2023. 5. 31.

나. 점검내용 : 등록요건 충족 여부, 산림기술자 이중취업, 자격중대여 여부 등
다. 제출기한 : 2023. 5. 19.(금)

라. 제출방법 : 전자우편(jiy2043@korea.kr), 등기우편, 방문제출

4. 작성서식은 아래 안내된 경로에서 내려받기 가능하며, 서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내려받기 경로 : 전라북도 누리집 → 부서별안내 → 환경녹지국 → 산림녹지과 → 부서소식 → '2023년 상반기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실태 조사 서식' 게시물 확인

끝.

전라북도지사인인



주무관	조인영	산림경영팀장	박미선	산림정책팀장	대결 2023. 3. 31. 송경호	산림녹지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	산림녹지과-6337	(2023. 3. 31.)	접수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효자동3가)	/ www.jeonbuk.go.kr				
전화번호	063-280-2681	팩스번호	063-280-3129	/ jiy2043@korea.kr		/ 비공개(5,7)	

"하나된 스포츠! 즐거운 어울림!"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23.5.12-20.), www.apmg2023.kr

전라북도 공고 제2023-899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4월 26일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정보통신공사업 제630373호	주식회사 지아이 대표자 주동수, 조창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1길 33(호성동1가)	2023. 4. 25.

끝.

전라북도 공고 제2023-902호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28일
전라북도지사

1. 특구 개요

- 가. 명 칭 :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 나. 위 치 : 전북 전주 친환경첨단복합단지 및 군산 국가산업단지 등
- 다. 면 적 : 약 677.8km² 및 도로 152.6km
 - (기존) 184.45km² 및 도로 101.6km, (추가) 493.35km²*, 51km
 - * 추가사업 면적 494.31km² 중 기존과 중복되는 곳을 제외한 면적은 493.35km²
- 라. 지정기간 : 2020.8.1. ~ 2027.12.31.(7년5개월)
- 마. 지정목적 : 탄소 융·복합 제품의 제조 및 효과성·안전성 검증을 통한 탄소 산업의 신시장 창출

2.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열람

- 가. 열람기간 : 2023.4.28.(금) ~ 2023.5.29.(월) / 32일간
(0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나. 열람장소 : 전라북도 미래산업국 탄소바이오산업과
- 다. 방 법 : 계획(안) 방문 열람 * 전자파일, 복사본 제공불가

3.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주요 변경(안)

○ 기존사업 : 특구사업자 명칭, 대표자, 주소 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명칭, 대표자	특구사업자명	대표자	특구사업자명	대표자	
	일진하이솔루스(주)	안홍상	일진하이솔루스(주)	양성모	
	(재)전북테크노파크	양균의	(재)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한국특수가스(주)	서홍남	한국특수가스(주)	한승문	
	(재)한국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	배정철	(재)한국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 호남본부	배정철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이항구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주소변경	특구사업자명	주소	특구사업자명	주소	
	(주)휴먼컴퍼지트	전북 군산시 서해로 249	(주)휴먼컴퍼지트	전북 군산시 자유무역로 152	

○ 추가사업 : 계획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사업명	탈부착형 탄소복합재 수소용기 적용 수소전력구동 특장차 실증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 실증	
실증특례	① 탄소복합재 수소용기 탈부착 수시점검 예외 적용 실증특례 ②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완화	① 70MPa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제조·사용특례 ②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충전특례 ③ 특장차 특장부분 등에 수소연료전지 적용 특례	
사업목적	탈부착형 탄소복합재 수소용기 규제해소로 탄소융복합 생태계 고도화	탈부착형 탄소복합재 수소용기 규제해소로 탄소융복합 생태계 고도화	
추가면적	진주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493.3km ² , 102km	진주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494.3km ² , 51km	
특구사업자	수산CSM(주관기관) 외 5개 기업·기관	(주)에테르씨티(주관기관) 외 5개 기업·기관	
사업내용	탈부착용 수소용기 제작 및 활선고소작업차 등 특장차 3종에 부착하여 안전성 실증	고압(70기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을 활선고소차, 고소작업대 특장부분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	

4. 기타사항

- 가.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전라북도 탄소바이오산업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나. 제출기한 : 2023.5.29.(월) 18:00까지(마감시한 도착분까지 유효)
- 다. 제출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탄소바이오산업과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탄소바이오산업과(☎063-280-30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의견서			
주 소			
성 명		연락처	

상기와 같이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위와 같이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 공고 제2023 - 904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 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4월 26일

1. 법 인 명 : 사단법인 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2. 소 재 지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3. 대표자성명 : 유 송 열
4. 설 립 목 적 : 자연의 나라-무주반딧불축제를 세계적인 환경축제 및 지역교유의 문화행사로 정착시켜 전통적 가치를 선양하고 자연환경 보존과 지역사회 무궁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5. 허가구분 : 정관 변경(제7조(대의원자격), 제15조(임원의임기), 제31조(수입금))
6. 변경허가연월일 : 2023. 4. 24.

전라북도 공고 제2023-907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4월 28일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정보통신공사업 제630374호	주식회사 동서기술 대표자 정웅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73, 6층(만성동)	2023. 4. 26.

끝.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3-3호

재산등록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퇴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2023년 4월 28일

■ 공 고 사 항

- ① 등록번호 : 제 00 호
- ② 소 속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 ③ 직 위 : 前)원장
 - 성 명 : 이 성 수
 - 생 년 월 일 : 56. 10. 05

소 속	소재지	성명	공개구분	퇴직일자	비고
(재)자동차융합 기술원	군산시	이성수	퇴 직	'23. 1. 20.	

재산 변동 사항 공개 목록

재산 변동 사항 공개 목록

소속	권리북도	직위	(전)자동차융합기술원장	성명	이성수	변동사유
(단위 : 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실거래가액)	(실거래가액)	
▶ 토지(소계)						
본인	답	전리북도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735-1번지 3,345.00㎡	171,841	5,686	0	177,527
배우자	답	전리북도 남원시 신촌동 289번지 906.00㎡	122,000	0	0	122,000
▶ 건물(소계)						
본인	아파트	전리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태평SKWIBW아파트 건물 164.13㎡	468,000	0	0	468,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본인	자동차	2009년식 현대그렌저 배기량(2,700cc)	11,320	0	0	11,320
배우자	자동차	2013년식 투싼 배기량(2,000cc)	6,390	0	0	6,390
▶ 예금(소계)						
본인	SK증권 4, 과학기술인공제회 96,043(20,041 증가), 농협은행 116,420(2,204 감소), 농협중앙회 0(39,651 감소), 대한기반은행정금계좌 23,496(7,733 감소), 삼성화재해상보험 25,577(2,502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3,에이비엘생명보험 54,667, 전북은행 1, 키움증권 87(86 증가)		1,021,499	189,955	122,083	1,089,371
본인	343,287		80,662	107,621	316,328	예수금

배우자		₩증권 3, 농협생명보험 37,200, 농협순채보험 2,250(800 증가), 농협은행 236,400(65,854 증가), 농협중앙회 2(2 증가), 삼성생명보험 215,063(1,808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34,707(2,873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3, 신한라이프생명보험 61,200(1,530 증가), 케이뱅크 989(989 증가), 키움증권 123(48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75,564	590,030	76,276	2,762	683,544	예수금
장녀		국민은행 3,164(1,666 증가), 농협은행 301(11,400 감소), 농협중앙회 78,005(25,000 증가), 신한은행 22, 한국산업은행 3,100(3,100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4,907(2,952 증가)	88,182	33,017	11,700	109,499	
▶ 증권(소계)			27,095	4,452	5,850	25,697	
본인	상장주식	대우전자부품보통주 4,320주, 삼성전자보통주 70주	16,129	0	5,323	10,806	주식 하락
배우자	상장주식	삼성전자보통주 146주(31주 증가), 셀트리온보통주 7주(7주 증가), 에스케이하이닉스보통주 7주, 이엔플러스보통주 700주(700주 증가), 현대자동차보통주 5주	10,966	4,452	527	14,891	
▶ 채무(소계)			0	7,032	0	7,032	
배우자	금융채무	농협은행 7,032(7,032 증가)	0	7,032	0	7,032	
▶ 회원권(소계)			35,000	0	35,000	0	
배우자	론도미니엄	남해힐튼(이난타) 감소	35,000	0	35,000	0	
총 계			1,794,755	199,061	162,933	1,764,883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03월 15일

등 록 기 관 의 장 귀하

등 록 의 무 자

이 정 수

(서명 또는 날인)

도지사 지시사항

◇ 2023. 4. 21.(금)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당면·현안업무	<p>○ 2024년 국가예산 확보 부처단계 대응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연일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 정부안 단계 예산반영이 중요한 상황임. - 5월 31일 부처예산안 기재부 제출 전까지 부처예산안에 도 주요 사업들이 최대한 담길 수 있도록 각 실국은 역량을 집중하기 바람. - 실국장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중앙부처 등 방문활동을 전개하고 활동결과는 신속히 보고(일일보고 체계 가동)하고, 필요한 사항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의원실 및 시군과 긴밀히 공조하기 바람. - 쟁점사업은 부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신속히 논리 보강 및 쟁점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지휘부 보고 및 활동을 추진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전 실·국)</p>

군산시 고시 제2023 - 62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유원지,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나운동 1195-4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8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나운동 1195-4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 가. 도시계획시설(유원지,도로)사업

구 분	시 설	세부시설	사 업 면 적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유 원 지	공공편익시설	주 차 장	2,164	-	
	숙박시설	호 텔	15,835	15,835	
	도 로	중로 2-2	174	-	감속차로설치
		소로 1-3	492	492	내부도로확폭
		소로 3-11	60	-	가속차로설치
	계	18,725	16,327		
도시계획도로	중로1-112호선		610	-	감속차로설치

나. 건축계획

구 분	건 물 명	지하/지상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비 고
합 계			1,761.7	6,413.16	
1동	호텔	1 / 7	1,141.77	4,914.73	호텔(객실, 사우나 등)
부대2동	부대시설-2	1 / 3	619.93	1,498.43	호텔(음식점)

다. 변경사유

- 컨벤션센터 사업계획 축소로 주차장 위치이동 및 군산시의 도시계획도로 (중로1-112호선) 확장에 따른 진입도로 가감차로의 설치계획 변경반영

3.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가. 성명 및 주소 : 고*점, 군산시 구시장로 46-1
- 나. 성명 및 주소 : 김*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27 102동 3602(여의도동)
- 다. 성명 및 주소 : 김*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8. 7. 13. ~ 2023.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가. 유원지 : 숙박시설지구(호텔)

위치	순번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군산시 나운동	1	1195-49	대	15,835	15,835	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27 102동 3602	한국산 업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여의도지점)	근저당	
						김*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파트 10동 802호				
	계	1필지		15,835	15,835						

나. 유원지 : 내부도로 소로1-3호선

(변경전)

위치	순번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군산시 나운동	1	1195-14	도	407	31	한국 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포일동)				
	2	1195-24	도	19	12	군산시					
	3	1195-51	전	321	277						
	4	1195-54	전	77	77						
	5	1196-6	유	2,774	2	한국 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포일동)				
	6	1196-7	유	1,657	53	국 (농수산부)					
	7	1504	도	1,461	40						
	계	7필지		6,716	492						

(변경후)

위치	순번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군산시 나운동	1	1195-87	도	79	31	군산시					
	2	1195-24	도	19	12	군산시					
	3	1195-51	전	321	277						
	4	1195-54	전	45	45						
	5	1195-81	전	32	32	군산시					
	6	1196-9	유	2	2	군산시					
	7	1196-10	유	53	50						
	8	1196-7	유	1,604	3	한국 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98				
	9	1504	도	1,461	40	농수산부					
	계	9필지		3,616	492						

※ 실시계획인가 승인에 따른 토지분할로 지적공부 정리.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군산시 공고 제2023-927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변전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21-74호(2021.06.04.)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군산시 나운동 130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변전시설)사업이 실시계획 대로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나운동 130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 나. 명 칭 : 154kV 서군산변전소 옥내화 사업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구 분	시설명	결정면적 (㎡)	건축계획			비고
			동 수	건축면적(㎡)	연면적(㎡)	
전기공급 설비	서군산 변전소	17,203	5동	1,283.12	2,714.96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전라북도 나주시 전력로 55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한국전력공사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1. 6. 4. ~ 2024. 4. 30.(준공 2023. 2. 1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 실음생략
7. 관계도서 : 실음생략

익산시 고시 제2023-91호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31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31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3년 4월 28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익산시 영등동 147-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31호)사업
 - 사업의 명칭 :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
 - 중로2류31호선 : L=214m, B=15m, 면적:3,31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익산시장
 - 주 소 : 전북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토지조서

공사명 :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지 (m ²)	편입 내역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동	지번			지번	편입 지적 (m 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익산	영등	147-7	답	258.0	147-7	258	유한회사 씨엔*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 (석왕동)	1)이리평화 ***** 2)신익산 ***** 3)이리평화 *****	1,3)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1길 **(평화동) 2)전라북도 익산시황등면 황등로 ***	1)근저 당권 2)근저 당권 3)지상 권		
2	익산	영등	149-17	전	1,381.0	149-17	1,381	유한회사 씨엔*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 (석왕동)	1)이리평화 ***** 2)신익산 ***** 3)이리평화 *****	1,3)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1길 **(평화동) 2)전라북도 익산시황등면 황등로 ***	1)근저 당권 2)근저 당권 3)지상 권		
3	익산	영등	158-2	전	616.0	158-2	616	유한회사 씨엔*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 (석왕동)	1)이리평화 ***** 2)신익산 ***** 3)이리평화 *****	1,3)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1길 **(평화동) 2)전라북도 익산시황등면 황등로 ***	1)근저 당권 2)근저 당권 3)지상 권		
4	익산	영등	159-1	전	101.0	159-1	101	유한회사 씨엔*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 (석왕동)	1)이리평화 ***** 2)신익산 ***** 3)이리평화 *****	1,3)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1길 **(평화동) 2)전라북도 익산시황등면 황등로 ***	1)근저 당권 2)근저 당권 3)지상 권		
5	익산	영등	160-1	답	106.0	160-1	106	유한회사 씨엔*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 (석왕동)	1)이리평화 ***** 2)신익산 ***** 3)이리평화 *****	1,3)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1길 **(평화동) 2)전라북도 익산시황등면 황등로 ***	1)근저 당권 2)근저 당권 3)지상 권		
6	익산	영등	163-4	답	299.0	163-4	299	유한회사 씨엔***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 (석왕동)					
7	익산	영등	164-9	답	545.0	164-9	545	유한회사 씨엔*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 (석왕동)	1)이리평화 ***** 2)신익산 ***** 3)이리평화 *****	1,3)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1길 **(평화동) 2)전라북도 익산시황등면 황등로 ***	1)근저 당권 2)근저 당권 3)지상 권		
8	익산	영등	776	도	11,824.9	776	8	익산시						

익산시 고시 제2023-92호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3년 4월 28일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사유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35	20	보 조 간선도로	891	중로1-33 (신흥동29-11)	대로3-15 (용제동597)	일반 도로	-	금 회	-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신설 - L= 891m - B= 2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도면 : 실음생략

익산시 공고 제2023 - 1325호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2호)사업 공사완료 공고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2호)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익 산 시 장
2023년 4월 28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999-2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2호)사업
 - 사업의 명칭 : 황등 중로2차(중로2류2호)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
 - L=1,066m, B=15m, 면적: 12,45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익산시장
 - 주 소 : 전북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4 12. 31.
6. 관련도서 : 실음생략.

정읍시 고시 제2023-6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정읍시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m ²)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km)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고속국도	1호	호남고속도로	하북동 ~ 북면 남산리	86,012.7	(증) 494	86,506.7	감곡면 계룡리 산19-1	입암면 등천리 산192	-감곡면 계룡리, 통석리, 대신리, 진흥리 -태인면 증산리, 오봉리, 낙양리, 태창리 -정우면 화천리, 우산리, 장순리, 우일리 -북면 화해리, 남산리 -하북동 -농소동 -하모동 -상평동 -삼산동 -입암면 마석리, 대흥리, 단곡리, 하부리, 등천리	34.2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종류	노선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고속 국도	2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휴게소 진출입로 도로구역 면적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정 : 86,012.7㎡ - 변경 : 86,506.7㎡ (증4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읍~천안방향 개방형휴게소 진출입로공사를 함에 따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고속국도로 변경 지정하고자 함

3. 도로공사 사업 시행 기간 : 2023. 5. 1. ~ 2024. 12. 30.

4. 수용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정읍시 건설과 건설행정팀(063-539-5822)

6. 지형도면게제 : 도면게제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열람가능
- 지형도면의 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따로 작성하지 않음

수용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정읍~천안방향 개방형휴게소 진출입로공사
도로구역 편입토지조서(금회 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시·면·리동	지번	지목	지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성 명	주 소	
1	정읍시 하북동	151-39	전	202		202		변*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501-1 **아파트 ***-**	신규
2	정읍시 하북동	151-40	임야	51		51		박*숙	진라북도 정읍시 수성2로 **-**, ***동 ***호(수성동, **아파트)	신규
3	정읍시 하북동	151-34	임야	206		206		국(국토해양부)		신규
4	정읍시 북면 남산리	550-14	대지	3,917		311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5	정읍시 북면 남산리	550-20	전	35		35		신*균	정읍시 북면 남산리 ***	신규

※ 금회 도로구역 변경 면적은 (증)494㎡

정읍시 고시 제2023 - 67호

정읍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정읍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제30조에 따라 변경내용을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063-539-57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정 읍 시 장
2023년 4월 28일

1. 사업시행지 위치 : 정읍시 하모동 607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정읍시 하모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사업면적 : A=23,025.7m²
 - 나. 사업규모 :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1식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정읍시장
 - 나. 주 소 : 정읍시 충정로 23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가. 종전토지

NO	위치	지번		지목	공부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합계					29,101.7	-	23,106.0	-	-	-	
1	하모동	607	607	차	21,006.2	-	15,800	-	정읍시	시,도유지	
2	하모동	12-1	-	답	482.0	-	482.0	-	정읍시	시,도유지	
3	하모동	13-1	-	답	760.0	-	760.0	-	정읍시	시,도유지	
4	하모동	14-1	-	답	59.0	-	59.0	-	정읍시	시,도유지	
5	하모동	16-1	-	전	1,425.0	-	1,425.0	-	정읍시	시,도유지	
6	하모동	16-3	-	칸	1.0	-	1.0	-	정읍시	시,도유지	제척
7	하모동	286-21	-	답	552.0	-	552.0	-	정읍시	시,도유지	
8	하모동	286-22	-	답	46.0	-	46.0	-	정읍시	시,도유지	
9	하모동	68-83	-	칸	40.0	-	40.0	-	정읍시	시,도유지	제척
10	하모동	14-8	-	답	76.0	-	76.0	-	정읍시	시,도유지	
11	하모동	15-2	-	대	446.0	-	446.0	-	정읍시	시,도유지	
12	하모동	68-82	-	답	18.0	-	18.0	-	정읍시	시,도유지	제척
13	하모동	609	-	도	4,190.5	-	3,401.0	-	정읍시	시,도유지	

나. 확정토지

NO	위치	지번		지목	공부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합계					-	23,025.7	-	23,025.7	-	-	
1	하모동	-	610	차	-	2,611.2	-	2,611.2	정읍시	-	
2	하모동	-	611	차	-	63.5	-	63.5	정읍시	-	
3	하모동	-	612	차	-	46.4	-	46.4	정읍시	-	
4	하모동	-	613	차	-	76.3	-	76.3	정읍시	-	
5	하모동	-	614	도	-	4,649.5	-	4,649.5	정읍시	-	

7.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교통시설

1)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③	자동차정류장	공영차고지	하모동 607일원	23,106	감)80.3	23,025.7	'14.4.24	경미한 변경

2)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③	자동차 정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정류장 면적축소 -면적: 23,106㎡ → 23,025.7㎡ 감)8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자동차정류장 면적 변경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도시과(☎063-539-57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관계도서 : “실음생략”

- 사업시행지의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지형도면 등은 열람장소에 비치

남원시 공고 제2023-922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23년 4월 28일

I.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적(m ²)			최 결 초 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458	취락지구 (등구지구)	자연취락지구	산동면 대기리 582-1번지 일원	37,623	증)1,786	39,409	남원시고시 제2020-15호 (2020.1.17)	

○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58	취락지구 (등구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변경 - (기정) 37,623m² → (증) 1,786m² → (변경) 39,409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구마을과 연계하여 영위되고 있는 구관장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 편입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도입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남원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

II. 공람 기간 : 2023. 4. 28. ~ 5. 12.(신문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

III. 공람 장소 및 주민 의견서 제출처 : 남원시 도시과(063-620-6454)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제출서 양식)를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관련도서 : “실음생략”(관련도서는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주군 고시 제2023-45호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국립축산과학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건축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국립축산과학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규정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 주 군 수
2023년 4월 28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80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국립축산과학원)사업
 - 명 칭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돈사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연구시설 : A=1,138,080.2㎡
 - 건축물 대장변경 : (기정)주동 34개동, 부속동 20개동 → (변경)주동 2개동, 부속동 52개동

구분	건축면적(㎡)			바닥면적(㎡)			비고	
	기정	증축	변경	기정	증축	변경		
합계	37,463.87	146.45	37,610.32	52,857.97	146.45	53,004.42		
A블럭	소계	33,972.77	146.45	34,119.22	49,503.32	146.45	49,649.77	
	주1, 부1~47	33,972.77	-	33,972.77	49,503.32	-	49,503.32	
	부32	-	146.45	146.45	-	146.45	146.45	금회
B블럭	소계	3,491.10	-	3,491.10	3,354.65	-	3,354.65	
	주1, 부1~5	3,491.10	-	3,491.10	3,354.65	-	3,354.6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장)
 -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건축허가일
 - 준공예정일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조서 : 게재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완주군 공고 제2023-822호

군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사회복지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완주군 고시 제2017-12(2017.01.26.)호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완주이서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완 주 군 수
2023년 4월 28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사회복지시설) 사업
 - 명 칭 : 완주이서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A= 38,490.1㎡

구 분		면적(㎡)	비 고	
총 계		38,490.1		
기 반 시 설	도 로	중로2-1	2,340.1	
		중로3-2	8,416.5	
		소로1-1	821.7	
		소로2-1	504.6	
		소로2-2	617.4	
		소로2-3	2,202.9	
		소로2-4	3,294.3	
		소로3-1	618.9	
		소로3-2	502.6	
		소로3-3	377.4	
		소로3-4	505.5	
	소로3-5	166		
	주 차 장		727.0	
	공 원	공원1 (유수지)	6,127.6 (1,259.9)	저류시설 중복결정
		공원2	1,052.3	
녹 지	녹지1	7,939.0		
	녹지2	2,063.6		
사 회 복 지 시 설		212.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혁신도시지역주택조합

- 주 소 : 전북 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123, 1층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2017. 03. 31. ~ 2023. 03. 31

6. 관계도서 : 게재생략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4), 건축허가과(☎063-290-2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공고 제2023 - 542호

임실 군계획시설사업(도로:중로3-12호선)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 공고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90-12번지 일원 군계획시설(도로:중로3-12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전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임실군 건설과(☎063-640-22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임 실 군 수
2023년 4월 28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90-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2호선) 사업
 - 명 칭: 임실 봉황11길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 규모 또는 면적
 - 중로3-12호선 : L=759.0m, B=12.0m, A=9,41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임실군수
 - 주 소 :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예정일: 2024. 12. 31.
6. 열람사항
 - 열람기간 : 도보 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임실군청 건설과
 - 열람내용 :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내용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붙임
8. 관련도서(도면) : “게재생략”
9. 관련 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의 종류	
계		61필지		15,482	9,418						
1	임실읍 이도리	89-4	도	613	5	임실군	공				
2	임실읍 이도리	89-6	도	144	58	임실군	공				
3	임실읍 이도리	89-7	답	154	154	임실군	공				
4	임실읍 이도리	90-16	답	133	133	기획재정부	국				
5	임실읍 이도리	90-14	답	400	400	기획재정부	국				
6	임실읍 이도리	90-15	답	21	21	김*석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106-2, 302동 1709호 (두암동, 두암3차무등과 크맨션)				1/3
						김*영	임실군 임실읍 봉황10길 43-6				1/3
						김*숙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374, 112/1203(계림동, 두산위브)				1/3
7	임실읍 이도리	90-18	답	458	458	김*석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106-2, 302동 1709호 (두암동, 두암3차무등과 크맨션)				1/3
						김*영	임실군 임실읍 봉황10길 43-6				1/3
						김*숙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374, 112/1203(계림동, 두산위브)				1/3
8	임실읍 이도리	90-17	답	45	45	기획재정부	국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 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의 종류	
9	임실읍 이도리	90-20	답	187	187	김*석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106-2, 302동 1709호 (두암동, 두암3차무등과 크멘션)				1/3
						김*영	임실군 임실읍 봉황10길 43-6				1/3
						김*숙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374, 112/1203(계림동, 두산위브)				1/3
10	임실읍 이도리	90-9	답	326	326	건설부	국				
11	임실읍 이도리	77-1	답	18	18	김*석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106-2, 302동 1709호 (두암동, 두암3차무등과 크멘션)				1/3
						김*영	임실군 임실읍 봉황10길 43-6				1/3
						김*숙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374, 112/1203(계림동, 두산위브)				1/3
12	임실읍 이도리	76-18	답	21	21	이*욱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675				
13	임실읍 이도리	934-120	천	422	422	건설부	국				
14	임실읍 이도리	109-9	답	34	34	최*수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북로 19 (도통동)	온누리신 용협동조 합		근저 당, 지상 권	
15	임실읍 이도리	109-4	답	32	32	최*수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북로 19 (도통동)	온누리신 용협동조 합		근저 당, 지상 권	
16	임실읍 이도리	935-14	도	47	47	건설부	국				
17	임실읍 이도리	109-11	답	24	24	김*태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06	농협은행(주)		근저 당	
18	임실읍 이도리	109-8	답	195	195	건설부	국				
19	임실읍 이도리	109-10	답	236	236	김*태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06	농협은행(주)		근저 당	

일련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0	임실읍 이도리	111-6	답	335	205	진삼용	포천군 소흘읍 직동리 341-1				24/66
						전라북도					42/66
21	임실읍 이도리	111-7	답	342	342	이*희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210				
22	임실읍 이도리	111-5	답	5	5	건설부	국				
23	임실읍 이도리	935-13	도	21	21	건설부	국				
24	임실읍 이도리	111-11	대	69	69	박*영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11길 172	㈜아세아텍			근저당
25	임실읍 이도리	935-16	대	44	44	박*영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11길 172	㈜아세아텍			근저당
26	임실읍 이도리	108-4	답	190	190	건설부	국				
27	임실읍 이도리	108-2	대	191	191	박*영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11길 172	㈜아세아텍			근저당
28	임실읍 이도리	935-15	대	15	15	박*영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11길 172	㈜아세아텍			근저당
29	임실읍 이도리	934-123	답	64	64	이*임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362, 616동 1001호 (장기동, 청송마을중흥 에스클래스아파트)				1/2
						이*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 1004동 805호(행신동, 소만마을)				1/2
30	임실읍 이도리	934-121	답	263	263	이*임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362, 616동 1001호 (장기동, 청송마을중흥 에스클래스아파트)				1/2
						이*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 1004동 805호(행신동, 소만마을)				1/2
31	임실읍 이도리	115-1	답	2	2	임실군향교재산	임실읍 이도리 812-1				
32	임실읍 이도리	934-36	천	724	392	건설부	국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의 종류	
33	임실읍 이도리	934-119	답	177	177	서*덕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495				
34	임실읍 이도리	934-118	천	600	600	건설부	국				
35	임실읍 이도리	117-6	천	52	52	건설부	국				
36	임실읍 이도리	117-5	답	98	98	건설부	국				
37	임실읍 이도리	118-1	답	212	212	서*덕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495	임실농업 협동조합		근저 당	
38	임실읍 이도리	119-7	답	278	278	건설부	국				
39	임실읍 이도리	120-6	천	46	46	임실군	공				
40	임실읍 이도리	119-10	답	246	246	유*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1-2 쌍용아파트 601-1305				
41	임실읍 이도리	120-5	천	18	18	임실군	공				
42	임실읍 이도리	121-2	답	85	85	건설부	국				
43	임실읍 이도리	121	답	78	78	유*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1-2 쌍용아파트 601-1305				
44	임실읍 이도리	119-6	답	138	138	유*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1-2 쌍용아파트 601-1305				
45	임실읍 이도리	119-9	답	56	56	건설부	국				
46	임실읍 갈마리	607	도	559	14	건설부	국				
47	임실읍 갈마리	435	답	3,833	348	나*채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212-4				
48	임실읍 갈마리	436-3	답	790	790	건설부	국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 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의 종류	
49	임실읍 갈마리	301-42	답	71	71	김*수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333				1/2
						김*수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139-28				1/2
50	임실읍 갈마리	586-2	도	585	585	건설부	국				
51	임실읍 갈마리	301-41	답	24	24	김*수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333				1/2
						김*수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139-28				1/2
52	임실읍 갈마리	600-28	천	191	191	건설부	국				
53	임실읍 갈마리	301-40	답	67	67	박*영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11길 172	임실농업 협동조합		근저 당, 지상 권	
54	임실읍 갈마리	301-43	천	240	240	박*영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11길 172	임실농업 협동조합		근저 당, 지상 권	
55	임실읍 갈마리	301-24	천	215	215	건설부	국				
56	임실읍 갈마리	301-39	답	27	27	박*영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11길 172	임실농업 협동조합		근저 당, 지상 권	
57	임실읍 갈마리	301-23	수	11	11	임실군	공				
58	임실읍 갈마리	300-9	답	16	16	건설부	국				
59	임실읍 갈마리	300-7	도	32	32	기획재정 부	국				
60	임실읍 갈마리	300-13	답	8	8	건설부	국				
61	임실읍 갈마리	300-6	도	954	76	건설교통 부	국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조사

일련번호	위 치		보상물건				물건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수량	단위	성명	주소	
1	임실읍 이도리	76-2	비닐하우스	2중,관수시설, 환기시설등포함	120	m ²	이*욱	임실읍 이도리 675	
			비닐하우스	2중,관수시설, 환기시설등포함	120	m ²			
			비닐하우스	2중,관수시설, 환기시설등포함	120	m ²			
			물탱크	용수관포함	1	식			
			전력시설	농업용	1	식			
			전력시설	농업용	1	식			
2	임실읍 이도리	76-2	다래나무		20	주	설*환	임실읍 치즈마을1길 19 시온펜션	
			호두나무		240	주			
			다래나무		10	주			
			간판		1	식			
3	임실읍 이도리	109-5	바닥포장	자갈	110	m ²	최*수	남원시 시청북로 19	
		109-4	바닥포장	콘크리트	192	m ²			
4	임실읍 이도리	109	바닥포장	콘크리트	48	m ²	김*태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06	
			바닥포장	자갈	77	m ²			
			남천		14	주			
5	임실읍 이도리	111-7외	관정		1	식	이*희	임실군 임실읍 봉황11길 170	
			바닥포장	콘크리트	33	m ²			
6	임실읍 이도리	111-2 외	정자		1	식	박*영	임실군 임실읍 봉황11길 172	
			바닥포장	자갈	20	m ²			
			느티나무		1	주			
			벚나무		6	주			
			남천		15	주			
			조경석		1	식			
			화단	사이목,잔디포함	1	식			
			소나무		3	주			
			수양단풍나무		1	주			

일련번호	위 치		보상물건				물건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수량	단위	성명	주소	
6	임실읍 이도리	111-2외	철쭉		30	주	박*영	임실군 임실읍 봉황11길 172	
			보리수나무		1	주			
			영산홍		4	주			
			사철나무		1	주			
			수국		1	주			
			화단	사이목,잔디포함	1	식			
			반송		2	주			
			소나무		5	주			
			주목		10	주			
			이팝나무		4	주			
			꽃사과나무		1	주			
			벚나무		2	주			
			모과나무		1	주			
			대추나무		1	주			
			사과나무		1	주			
			블루베리		4	주			
			목련나무		3	주			
			골담초		1	주			
			앵두나무		1	주			
		매실나무		1	주				
명자나무		1	주						
귀퉁나무		1	주						
		108	전력시설	농업용	1	식			
7	임실읍 이도리	118 외	비닐하우스	2중,관수시설, 환기시설등포함	560	m ²	서*덕	임실읍 신안3길 36-8	
			배수시설	주름관	1	식			
			자두나무		2	주			
			대추나무		2	주			

일련번호	위 치		보상물건				물건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수량	단위	성명	주소	
7	임실읍 이도리	118 외	전력시설		1	식	서*덕	임실읍 신안3길 36-8	
			전력시설		1	식			
			전력시설		1	식			
			전력시설		1	식			
8	임실읍 이도리	119-1	전력시설		1	식	유*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1-2 쌍용아파트 601-1305	
9	임실읍 갈마리	301-19	전력시설		1	식	박*영	임실군 임실읍 봉황11길 172	